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8. . . (제 회)	

**제 품 안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제조·수입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고조사 명령의 요건과 사고조사 방법·절차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자에게 사고조사 명령을 내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제1항)
 - 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정도,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등
- 나. 사고조사 방법은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존 제품사고조사 센터의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4조의3제2항)
- 다.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사고조사

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 제4항)

-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5항)

라.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6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
2.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5. 그 밖에 사업자에 의한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으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고제품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고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u>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u>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u> 2. 사고로 인한 <u>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u>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u>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u> 4.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5. 그 밖에 사업자에 의한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u> <p>② <u>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③ <u>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으로부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u></p>

④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사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고제품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고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870 - 5411 (043) 870 - 5412